2021.3회차 금융기관 대부이자 지원 시행

* 시행 일정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구분** | **일자** | **내용** |
| 신청 | **10.5 ~ 10.8** | ERP>복지후생>신청>대부(긴급자금) 이용  - 기금대부 or 이자지원 선택  - 이자지원 : 금융사 선택  (선택가능은행 : 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)   * 2021.3회차부터 **“농협”** 제외 |
| 접수 및 선정 | **10.9 ~ 10.13** | 기관별 선정위원회 개최 후 선정결과 등록  (신청사항 수정 가능기간) |
| 채권확보(기금대부) | 10.14 ~ 10.26 | 보증보험증권 또는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포함 대부신청서 제출 |
| 대부금지급(기금대부) | 10.29 | 별도계좌로 지급 |
| 은행대부신청(이자지원) | **(우리)10.14 ~ 10.19**  **(국민)10.14 ~ 11..12**  **(신한)11.01 ~ 11.12** | 선택은행 방문 -> 대부실행  (은행변경요청: welfare04@kt.com으로 **10.19일까지** 요청)  ※대환조건 대부가능 은행으로 변경희망 시  (대환조건 대부 가능 금융사 : **국민**\_당행 대환만 가능**, 신한** 限 ) |
| 이자지원금 지급(이자지원) | 11.30 | 별도계좌로 지급 |

* 대출규제 강화로 선택금융사별 대부신청기간이 상이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바람
* 주의사항

|  |  |
| --- | --- |
| **구분** | **내용** |
| 신청(개인) | 🢝 이자지원 선택 시 금융기관 선정 신중  (대환조건 대부가능 은행 : **국민**\_당행 대환만 가능**, 신한**) |
| 선정(기관) | 🢝 선정 시 신청금액의 변경은 최대한 지양바람  (단, 부득이한 경우는 반드시 신청직원에게 금액 변경을 안내해야 함)  - 채권확보 또는 은행대부신청 시 대부금액 오류로 혼선발생 유의 필요 |
| 금융기관  대부신청  (개인) | 🢝 선정자에 한해 “대부추천서” 출력하여 금융기관 대부 신청  - 메뉴 : ERP>HR>복지후생>신청>대부(긴급생활자금) 신청내역 “출력” 버튼 활용  - **금융기관 대부심사과정에서 대부거절 또는 대부금액 하향될 수 있음**  - **신청기한 내 금융기관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대부승인 가능**  (이자율, 진행가능방식, 상품조건 등은 상품설명서 및 은행 문의하여  참조 후 비교, 선택바람)   * 대면 가능: 국민, 비대면 가능 : 신한 , 우리 * 개인신용대부한도(금융사별 확인필요) ≤ 기존 은행대부금액인 경우   이자지원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“대환조건 대부가능” 금융사를 선택해야만 이자지원 혜택 이용가능(고이율 기존대부상품을 저이율 금융기관 대부이자 지원상품으로 전환하는 개념임) |

금융기관 대부이자 지원 제도 Quick이해

* 운영기준

|  |  |
| --- | --- |
| 구분 | **내용** |
| 신청 | **🢝 연 3회(2월, 6월, 10월 신청 및 선정)최초지원 3월, 7월, 11월** ※세부일정 별도 문서 공지 |
| 선정 | 🢝 기관별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기관별 대부자 선정위원회 자체심의 및 선정  🢝 연령별 이원화((만40세 미만, 만40세 이상)하여 선정  🢝 직원 본인결혼 사유 신청자 우선 선정 |
| 대부금액 | 🢝 최대 3천만원(1천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) |
| 지원기간 | 🢝 최대 5년(중도해지의 경우 지원중단) |
| 지원금액 | 🢝 최대 연 1.5%까지 지원(본인 최소 부담이자율 1%) |
| 지원금액 | 🢝 매월 말일(별도계좌 입금) |

* 신청절차

|  |  |
| --- | --- |
| **구분** | **제출서류** |
| 신청(개인) | 🢝 신청메뉴 : ERP > HR > 복지후생 > 신청 > “**대부(긴급자금)**”  🢝 “금융기관 대부이자 지원신청” 버튼 선택   * **3개** 은행(국민, 신한, 우리) 중 선택**(2021.3회차부터 “농협” 제외)** |
| 선정(기관) | 🢝 신청마감 후 기관별 대부자 선정위원회 개최하여 선정 |
| 금융기관  대부신청  (개인) | 🢝 선정자에 한해 “대부추천서” 출력하여 금융기관 대부 신청  - 메뉴 : ERP>HR>복지후생>신청>대부(긴급생활자금) 신청내역 “출력” 버튼 활용  - **금융기관 대부심사과정에서 대부거절 또는 대부금액 하향될 수 있음**  - **신청기한 내 금융기관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대부승인 가능**  (이자율, 진행가능방식, 상품조건 등은 상품설명서 및 은행 문의하여  참조 후 비교, 선택바람)   * 대면 가능: 국민, 비대면 가능 : 신한 , 우리 |
| 지급(본사) | 🢝 대부유지명단에 대해 이자지원금액 매월 말일 별도계좌 입금 |

* Q&A

|  |  |
| --- | --- |
| **Q1.** | **기금대부와 비교할 때 장∙단점은 무엇인가요?** |
| **A1.** | **(장점)**  ∙ 보증보험가입 등 필요 없어 **별도 비용(10만~30만원대 보증보험료) 없음**  ∙ **채권확보 절차 없이 개인의 신용에 의해서만 평가** 후 대부시행  ∙ **5년 동안** 원금 상환 없이 **이자만 상환하여 경제적 부담이 적음**  ∙ 기금대부에 비해 배정금액 및 **선정율이 높아 이용장벽이 낮음**  ∙ 5년 지원기간 이후에 은행과 협의를 통해 대부 유지가능  **(단점)**  ∙ 개인 **신용대출한도에 포함**(이미 한도금액만큼 대부이용 시 추가 대부 불가)  **.** 기관 선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**심사과정에서 대부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**  (사전에 금융사별 상품설명서 등 참조하여 사전 확인 후 신청여부 및 금융사 선택 결정)  ∙ 신용대출이므로 1년단위 갱신, 재평가로 **은행이자율 변동에 따른 지원금액 변동가능**   * 문의처 : (국민) T.031-8022-8303   (신한) T.031-711-5300 (우리) T.02-730-5273 내선 315번 또는 314번 |
| **Q2.** | **이자지원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** |
| **A2.** | **∙ 본인 최소 부담 이자율은 1%, 회사 최대 지원 이자율은 1.5%**  (예)은행이자율이 2.4% 적용된 경우 : 본인 1% 부담, 회사 1.4% 지원  은행이자율이 2.9% 적용된 경우 : 본인 1.4% 부담, 회사 1.5% 지원  **∙ 중도에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하면 대부잔액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지원이 감소**  **또는 중단됩니다.** |
| **Q3.** | **은행이자율이 대부기간 중 변경될 경우 회사 지원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?** |
| **A3.** | ∙ 매월 적용되는 개인별 은행이자율을 기준으로 회사 지원이자율도 변경됩니다. |
| **Q4.** | **가입대상 은행의 기존 대부가 있는데 선정되면 해당 대부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?** |
| **A4.** | 은행별로 가입 대상 대부상품이 지정되어 있어 선정된 후 신규 가입해야만  지원 가능하므로 기존 대부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 |